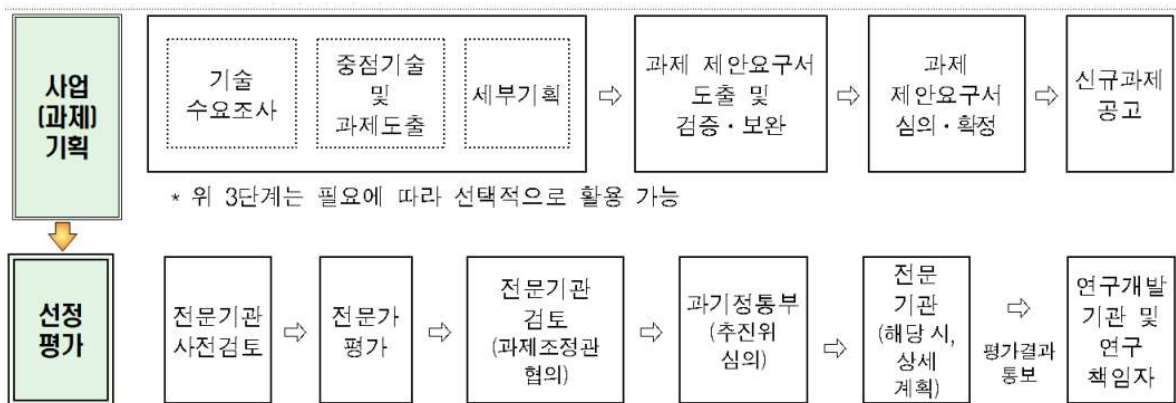


선고 2023구합77542 판결



과제 선정



* 출처 : 재단 원천기술개발사업 기획, 선정, 평가 매뉴얼

(1) 판결요지: 연구과제 선정에서 탈락한 자가 선정평가에 차명한 각 평가위원의 평

가점수, 평가의견 기록된 평가서의 정보공개 신청 - 평가서 공개신청 거절 처분
은 적법함.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
해당함

(2) 평가위원 명단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 처분은 부적법함.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
야 함. 연구재단 피고는 평가위원이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는지 원고
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, 오히려 피고 스스로가 평가
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사업명을 포함한 평가위원 명단의 공개
를 사전에 정하고 있었던바, 이는 평가위원들이 어느 사업의 평가를 담당하였는
지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담당
하는 평가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할 것을 기대하였기
때문으로 보인다.

(3) 또한 1명의 신청자에 대하여 복수의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고, 평가위원들의 개
별 평가점수와 평가의견은 공개되지 아니하므로, 평가위원들이 어느 사업의 평가
를 담당하였는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결과와 관련하여
특정 평가위원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.

(4) 선정평가의 합격선 공개는 적법함. 연구재단 피고는 선정된 과제의 합격선 점수

가 공개되거나, 원고의 평가항목별 점수나 순위가 공개될 경우, 그 분쟁으로 인하여 평가위원들의 평가업무 수행 자체를 꺼려할 우려가 있으며, 그에 따라 피고가 평가위원 섭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신청자들에 대한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공개되지 아니할뿐더러, 설령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일부 추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점수, 합격선 및 순위는 복수의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점수의 평균 및 그에 따라 연동되는 결과에 불과할 뿐이고, 특정 평가위원이 원고 또는 선정자에게 어떠한 점수나 평가를 하였는지는 여전히 비공개 상태에 있다. 그러므로 이미 공개하고 있는 총점 평균 외에 각 항목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하여 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추가로 어떠한 문제제기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.

- (5) 평가위원의 인적사항 비공개 상황에서 다른 정보와 조합하여 특정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을 부여한 해당 평가위원의 특정할 수 있는 경우 - 관련 정보 비공개는 적법함. 그 평가위원이 참여한 세부과제 등 관련 정보의 비공개 결정 적법. 그 결과 평가위원들이 공개에 대한 부담과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평가업무를 기피하게 되거나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될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. 해당 부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.

행정소송, 행정심판, 이의신청, 집행정지, 직권취소, 민형사소송, 법률자문,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